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8
----------	-----

2024. 11. 26.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6.)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2022.3.1.~2025.2.28.)의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풍부한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민간위탁기간 : 2025. 3. 1. ~ 2028. 2. 28. (3년)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30,958,925원 (※2025년도 원가계산 산정 전문기관 검토 기준)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격

- 시설장(센터장) 인건비 기준 5급 15호봉 이하(공무원 보수규정) 책정을 조건으로 승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주요내용 검토

-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 제출된 동의안 및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 향후 위탁기간을 3년간(2025. 03. 01. ~ 2028. 02. 28.)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강남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같고, 위탁시설 또한 기존 시설과 동일하며,
 -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되었음.

- 조건부 적격의 사유는 센터장의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님.
-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의 성과평가 결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 하는 등 우수한 실적도 있으나, 만족도 조사에서 ‘봉사 장소 확대’, ‘활동의 다양성 증대’, ‘교육프로그램 확대’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나.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이후 복잡한 사회문제에 다양한 혁신 주체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 패러다임도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시민성 기반 자원봉사로 전환됨.
- 청소년 등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원봉사와 같은 비대면성·비공식성·비정규성, 개인적 일대일 접근방식이 부상하며,
- 조직 중심의 봉사활동 대신 자기 지향적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사회문제의 구조적 인식 결여를 해소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를 추구함.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사회적 신뢰자본 회복·공동체 재건 등 시민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의 역할 확장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 이번 동의안 제출을 계기로 구 차원의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전환기 이전	전환기 이후
참여방식	오프라인 봉사	융·혼합형(대면+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장소	국내활동 중심	글로벌 자원봉사 확산(국내·외)
주요이슈	사회복지 관련 이슈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련 이슈
활동범위	전통적 사회복지시설 중심	지역사회 단위/특성화
참여동기	자선적/이타적 참여동기	성찰적/자기성장 참여동기
구조/기간	조직 중심/장기적 참여 위주	개인중심/단기적·이슈 위주
관계성	활동가와 수혜자의 분리	상호호혜적 관계
자원봉사특성	프로그램/서비스 제공형	시민 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
공식여부	공식적(formal) 자원봉사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

다. 종합의견

- 제출된 동의안은 현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남구 자원봉사에 대한 역량강화 및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2025. 3. 1. ~ 2028. 2. 28.까지 3년 간 민간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되었음.
-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의 성과평가 결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 하는 등 우수한 실적도 있으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봉사 장소 확대, 활동의 다양성 증대,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수탁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강남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발성,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지역

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등을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추진함이
필요함.

- 상기 서술한 부분을 더하여 민간위탁 운영 시 공공성, 효율성, 전
문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8
----------	-----

제출년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주민자치과

1. 제안이유

- 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2022.3.1.~2025.2.28.)의 만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 나.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풍부한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운영
 -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자원봉사센터 시설 관리 전반 및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원봉사 사업 발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8층 일부, 9층(역삼동)
- 규모 : 262.32㎡(대지면적 : 394㎡)

구 분	면적(㎡)	내 용	비 고
9층	193.69	사무실(1), 센터장실(1), 회의실(1), 소모임실(1) 탕비실(1), 화장실(2)	262.32
8층	68.63	교육실(1), 문서보관실(1), 물품보관실(1), 화장실(2)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025. 3. 1. ~ 2028. 2. 28.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수탁기관 자격 기준

-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관련 사무수행 경험(실적),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유사 사업 및 위탁사무 수행실적, 사업 계획서(3년간)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

- 위원회 구성 : 9명~12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간사 : 주민자치과장
- 위원자격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기관장, 자원봉사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구의원 등
- 선정방법 : 각 분야 심사위원 3~5배수 명단 작성(비공개)하여 감사담당관 통보 → 감사담당관 무작위 추첨(9명~12명 이내)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30,958,925원 (※2025년도 원가계산 산정 전문기관 검토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①	인	기	본	급	316,941,600	38.1	2024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제	수	당(정근수당 등)	44,712,505	5.4									
		기	타	수	당(명절휴가비 등)	92,662,044				11.2					
		퇴	직	충	당	금				37,443,012	4.5				
		~	보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5,928,257	2.0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0,219,227	2.4
				고	용	보				험	료	5,167,136	0.6		
				산	재	보				험	료	4,313,435	0.5		
				장	기	요				양	보	험	2,062,709	0.2	
		소			계	539,449,925				64.9					
②	지	여	비(국내/국외)	360,000	0.04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									
		임	차	료	12,240,000	1.5				지방자치법제146조3항에 의거 지출내역에 따른 25년 물가상승률 반영					
		소	모	품	비	5,400,000				0.6	2025년 강남구 주요경비 예산 편성기준				
		수	선	유	지	비				1,400,000	0.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시설물유지보수예방조치			
		통	신	비	5,520,000	0.7				지방자치법제146조3항에 의거 지출내역에 따른 25년 물가상승률 반영					
		차	량	유	지	비				10,169,000	1.2	2025년 기금운용 계획기준유류비 단가 기준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9,300,000	2.3	전년 고지금액 평균액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기준	
		이	용	수	수	료				2,960,000	0.4	계약단가 기준			
		기	타	운	영	비				10,160,000	1.2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			
		소			계	67,509,000				8.1					
③	사	업	비	224,000,000	27	사업별 산정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830,958,925												
위탁비용(A-B)			830,958,92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격

○ 시설장(센터장) 인건비 기준 5급 15호봉 이하(공무원 보수규정) 책정을 조건으로 승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심사 평가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운영기반	· 자원봉사 관련사무 수행경험(실적) · 인력 보유현황 · 재정부담 능력	10	주관부서 담당자 평가
		감점	· 근로자 처우 / 종합성과평가 결과 / 참가자격 제한 / 중대재해 발생	-5	
정성적 평가 (90)	사업추진 이해도 (20)	목적과 취지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취지·목적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운영에 대한 추진의지 및 전문성	10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평가
		발전 전략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비전제시 · 위탁기간 중 창출가능한 성과목표 등 중장기 발전전략	10	
	사업수행 계획 (70)	사업운영 계획	· 기획·구성의 우수성과 창의성 · 사업계획의 강남구 적합성 및 차별성	5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계획)	5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계획 · 자원봉사활동 홍보계획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모집계획	10	
		예산집행 계획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의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	15	
		지역협력 계획	· 지역사회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효과성 등	15	
		사회적 가치 기여도	· 관련 업계 평판 및 인지도 · 대내외적 사회적 기여 경험	5	
		종사자 고용 안정성 방안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 승계 등	5	
		안전관리 능력	· 재해대응 체계 및 관련 규정, 매뉴얼 등 관리 계획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 전인력 및 예산 관리 계획	10	

※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김미화 (☎ 3423-5212)